

양천구시설관리공단직제규정

제1장	총	칙	1		
제2장	구	성	원	1	
제3장	조	직	2		
제4장	분	장	사	무	2
제5장	보	칙	3		
부	칙	3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직제규정

제 정	1999. 9. 8	일부개정	2014. 4. 7(규정 제145호)
일부개정	2001. 4.30(규정 제30호)		2014. 11. 10(규정 제148호)
	2002. 3. 2(규정 제39호)		2014. 12. 22(규정 제152호)
	2002. 5.24(규정 제42호)		2015. 12. 3(규정 제161호)
	2002. 9.30(규정 제45호)		2016. 7. 7(규정 제172호)
	2002. 4.30(규정 제48호)		2016. 12.1(규정 제180호)
	2004. 1.13(규정 제58호)		2017. 1. 1(규정 제181호)
	2005. 2.24(규정 제67호)		2018. 2.22(규정 제192호)
	2007. 3.30(규정 제70호)		2018. 11. 1(규정 제198호)
전부개정	2007. 4.25(규정 제83호)		2019. 12. 12(규정 제212호)
일부개정	2007.12.10(규정 제87호)		2020. 11. 5.(규정 제218호)
	2008. 1.30(규정 제90호)		2021. 1. 14.(규정 제221호)
	2008. 3.17(규정 제93호)		2021. 4. 1.(규정 제226호)
	2008. 8.11(규정 제97호)		2022. 2. 3.(규정 제240호)
	2008.12.15(규정 제103호)		2024. 1. 11.(규정 제255호)
	2009. 3.30(규정 제107호)		
	2009.12.10(규정 제107호)		
	2009. 3.30(규정 제107호)		
	2009.12.10(규정 제110호)		
	2010. 1. 5(규정 제116호)		
	2010.12.31(규정 제119호)		
	2012.11. 9(규정 제124호)		
	2013. 1. 15(규정 제132호)		
	2013. 4. 10(규정 제13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직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단의 직제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정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직제의 개편) 공단의 기구 및 직제의 신설·개편·폐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회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2 장 구 성 원

제4조(구성원) 공단에 이사장, 이사 및 감사와 직원을 둔다.

제5조(이사장)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6조(이사·감사) ①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여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감사는 공단의 회계 및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③비상임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직무대행) ①이사장 유고시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상임이사 유고시에는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정관 제12조제2항에서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상임이사가 공석인 경우에는 경영기획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1.1.]

제8조(직원) ①직원은 관리직, 지도직, **기술직**, 계약직, 업무직 및 기간제근로자로 구분한다.[개정 2013.4.10, 2017. 1. 1, 2018. 2.22, 2024. 1. 11.]

②공단은 직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원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정원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고문 및 자문위원 등) ①이사장은 공단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자문 받기 위하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공단의 고문 또는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3 장 조 직

제10조(기구) ①공단에 본부와 경영기획팀, 성과감사팀, 안전관리팀, 주차사업팀, 양천센터, 신월센터, 목동센터를 둔다.[개정 2013.1.15., 2014.11.10., 2016.12.1., 2022.2.1.]

②공단의 기구표는 “별표 1”과 같다.

제11조(직위·직급) ①본부장은 상임이사로 보한다.[개정 2017. 1. 1]

②(삭제)[개정 2013.1.15][삭제 2014.11.10]

③팀장은 3급 내지 5급, 일반계약직 가급으로 보한다.[개정 2017. 1. 1]

④보직을 받지 못한 직원은 팀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제12조(정원의 총수 및 정원책정기준) ①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의 정원의 총수는 정원87명으로 한다.[개정 2014.4.7, 2015.12.3., 2016.7.7., 2018. 2.22, 2018.11.1.]

②공단의 직급별, 팀별 정원은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직제규정시행내규로 정한다. [개정 2017. 1. 1., 2021. 4. 1.]

③(삭제)[개정 2017. 1. 1]

④(삭제)[개정 2017. 1. 1]

제 4 장 분 장 사 무

제13조(부서의 직무분장) 각 부서의 분장사무는 직제규정시행내규로 정한다.[개정 2021.4.1.]

제14조 (삭제 2021.04.01.)

제15조 (삭제 2021.04.01.)

제16조(직무분장의 조정)[개정 2013.1.15] ①각 팀간 분장사무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이사장의 결정에 의한다.

②팀 단위 소속직원의 업무분장은 당해 팀장이 하고, 분장결과를 인사 담당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각 팀은 상호 관련 있는 사무에 관하여 유기적으로 협의,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직무수행과 책임)[개정 2013.1.15] ①공단의 임·직원은 분장된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상당한 책임을 진다.

②이사장은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의 일부를 소속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18조(시행내규)[개정 2013.1.15]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규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7. 4.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12.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3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3.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8.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팀제 도입에 따른 다른 규정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운영규정 제6조 및 제8조 중 “총무부장”을 “기획혁신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52조 제1항 중 “부장”을 “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시행내규 제35조 제1항 중 “총무팀장”을 “인사담당”으로, 동항 및 제52조 중 “총무부장”을 “기획혁신팀장”으로, 제26조 별표 3중 “부(관)장”을 “팀장”으로, 제19조 별지 제6호 및 제46조 별지 제20호 중 “총무부장”을 “기획혁신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보수규정시행내규 제9조 제1항 및 별지 서식 중 “총무부장”을 “기획혁신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계약직원규칙 제11조 제2항 중 “부(관)장”을 삭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당직근무규정 제7조 제1항 중 “총무팀장(관리팀장)”을 “경영지원팀장(각 센터팀장)”으로, 동조 제2항 중 “총무부”를 “경영지원팀(각 센터팀)”으로, 제11조 제2항 제1호 중 “부(관)장”을 “경영지원팀장(각 센터팀장)”으로, 제12조 제2호 중 “총무부장”과 동조 제4호 중 “총무팀장(관리팀장)” 및 제13조 중 “총무팀장(관리팀장)”을 “경영지원팀장(각 센터팀장)”으로, 제17조 제1항 및 제3항 중 “총무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별표 당직근무수칙 제6호·제9호 및 별지 제1호 서식 당직변경원 중 “총무팀장(관리팀장)”을 “경영지원팀장(각 센터팀장)”으로, 별지 제2호 서식 당직근무일지 및 별지 제3호서식 보안점검표 중 “부장”을 “팀장”으로 각각 변경한다.

⑦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재무회계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 중 “총무부장” 및 제2호 중 “총무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동항 4호 중 “사업팀장”을 “사업부서팀장”으로, 동항 제5호 중 “총무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동호 중 “관리팀장”을 “해당 팀장”으로, 제15조 제1항 중 “총무부”를 “경영지원팀”으로, 동항 중 “총무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동조 제2항 중 “담당 팀장”을 “담당 파트장”으로, 제18조·제19조·제21조 중 “총무부장”을 “기획혁신팀장”으로, 제47조 중 “총무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각각 변경한다.

⑧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물품관리규정 제4조 제1항 중 “총무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공인규정 제3조 중 “총무부”를 “경영지원팀”으로, 제6조·제7조·제8조·제9조·제11조 중 “총무부장”을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정 중 “총무부장”을 모두 “기획혁신팀장”으로, 제16조 제1항 중 “3급(부장급)”을 “팀장급”으로, 동조 제4항 중 “총무팀장”을 “기획혁신P/L”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내부평가 규정 제3조 제2항 중 “부(관)장 또는” 및 제5조 제1항 중 “(총무팀)”을 삭제한다.

부 칙[2009. 3.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된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 현원이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당해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 칙[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공단정관 제13조 별표 1을 이 규정 제10조 별표 1과 같이 한다.

부 칙[2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제규정상의 “기획혁신팀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4조 별표1의 관리직 및 지도직란의 “4급~6급”, “P/L”을 삭제한다.

③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위임전결규정 제4조(전결사항) 중 “및 P/L의”를 삭제하며, 별표1 전결권자 중 “P/L”란을 모두 삭제하고, 이를 팀장의 전결사항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기획 및 심사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조직 및 위원장의 직무 등) 중 “기획혁신 P/L”을 “담당”으로 한다.

부 칙[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제규정상의 “기획홍보실장” 및 “경영지원팀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한다.

부 칙[2012.11. 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현장근로원취업규칙(규칙 제25호)> [2013. 4. 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생략)

제3조(다른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양천구 시설관리공단 제규정상의 “일용근로원”을 “현장근로원”으로 한다.

부 칙 [2014. 4.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기타 제규정상의 경영기획실을 경영기획팀으로, 시설운영팀을 시설사업팀으로, 양천센터팀은 양천센터로, 신월센터팀은 신월센터로, 목동센터팀은 목동센터로 한다. 또한 “경영기획실장”을 경영기획팀장으로 및 “시설운영팀장”을 “시설사업팀장”으로 한다.

부 칙 [2017. 01.0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내규 폐지) 시행내규 제32호 직제규정시행내규는 폐지한다.

부 칙 [2018. 02.2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0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3.]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기타 제규정상의 시설사업팀을 안전관리팀으로 하고, “시설사업팀장”은 “안전관리팀장”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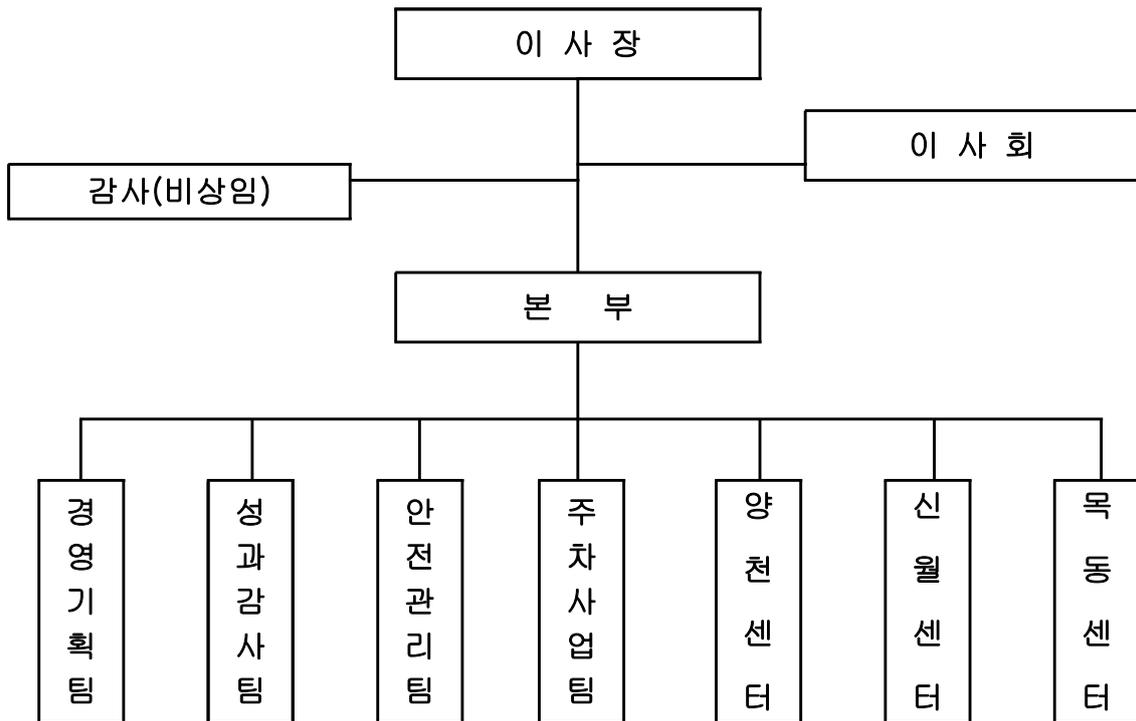
부 칙 [2024. 1. 11.]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규정의 개정) 서울특별시양천구시설관리공단 제규정상의 ‘기능직’을 ‘기술직’으로 한다.

【별표 1】 (제10조 관련) [개정 2001.4.30, 2002.3.2, 2002.5.24, 2002.9.30, 2003.4.30, 2004.1.13, 2005.2.24, 2007.12.10, 2008.1.30, 2009.12.10, 2010.12.31, 2013.1.15, 2014.11.10., 2016.12.1., 2022.2.1.]

기 구 표



【별표 2】 (삭제 2021.04.01.)